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해 외 농 업 · 산 립 자 원 개 발 협 력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 개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모니터링(안 제6조 신설)

- 1) 기본 모니터링은 안 제6조제2항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으로 하고, 수시 모니터링은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으로 함
- 2)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3)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4) 모니터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제농업협력사업지원기관 등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신설)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하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보유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와 업무수행능력이 적절한지 그리고 설립목적이나 활동영역이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3)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국제농업협력사업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간의 연계, 국내기업의 농업기술 해외전파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 농업·농촌 관련 사업 수주 등 지원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국제산림협력사업과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간의 연계, 국내기업의 임업기술 해외전파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 산림자원 관련 사업 수주 등 지원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지정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해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정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함

다. 반입명령서 등과 반입협의회(안 제9조, 제9조의2 신설)

1) 반입명령서와 이행계획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고 반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함

라. 손실보상심의회(안 제10조 신설)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손실보상심의회를 둘 수 있음
- 2) 손실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함

마.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안 제11조 신설)

- 1)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함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함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각하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함
- 4)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의 모니터링)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모니터링 위탁기관”이라 한다)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모

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 법 제35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은 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농업협력 분야의 전문기관

②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5.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 사업계획서 또는 국제산림협력 사업계획서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4. 국제농업협력, 국제산림협력 관련 최근 3년간 연구 또는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의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5. 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
2. 업무수행능력
3. 설립목적 또는 활동영역의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과의 관련 여부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신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3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간의 연계

2. 국내기업의 농업기술 해외전파 지원

3. 국내기업의 해외 농업·농촌 관련 사업 수주 등 지원

⑧ 법 제3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과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간의 연계

2. 국내기업의 임업기술 해외전파 지원

3. 국내기업의 해외 산림자원 관련 사업 수주 등 지원

제8조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반입명령서 등) ①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반입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9조의2(반입협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입명령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27조제6항에 따라 협의회(이하 “반입협의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반입명령의 필요성

2.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3. 반입대상 물량

4. 반입 가격

5. 반입 시기

② 제1항의 반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손실보상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제33조제4항에 따른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영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에 손실보상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실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1조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 ①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기간	일
사업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현지사업자)	상호	국가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 개요	사업명		대상 자원	
	투자규모		투자비율	
	사업장 소재지		개발방법	
※ 아래 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개발방법 [] 투자 규모비율 [] 계약 상대방 [] 대표자 [] 지분 [] 사업장 소재지 [] 그 밖의 변경사항				
변경 사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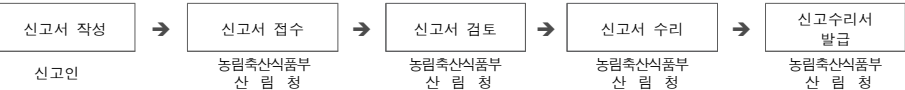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 립 청 장 귀하

신고인 (변경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결의 등의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 자 료(「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산림 자원개발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
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
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림사업 담당 직원이 농림사업 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사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림사업 등록 및 신청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거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고서의 각 항목(상호,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현지사업자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명, 투자규모, 투자비용, 사업장 소재지, 개발방법)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내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신고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본 사업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상호,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현지사업자 상호,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명, 대상 자원, 투자규모, 투자비용, 사업장 소재지, 개발방법)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신고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제농업협력사업/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신청인	성명	부서명	직위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제농업협력 사업계획서 또는 국제산림협력 사업계획서 2.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4. 최근 3년간 연구 또는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5. 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의2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의2제5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명령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 호			
대상자	사업자 상호		
	대표자 성명		
반입대상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물량	반입국가·지역
반입 가격			
반입 시기			
명령의 사유 및 내용			
보상 관련 사항			
그 밖의 사항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을 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직인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입명령 이행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출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반입명령 이행계획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대상 물량
	이행방법 및 경로	
	이행 완료 예정 일자	
	비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귀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청구인	→ 접수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 검토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 결정 내용 통지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앞쪽)

손실보상금 결정서				
결정번호		제 호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리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의		전화번호	
지급액	금액 : 원정(W)			
결정내용은 뒤쪽에 작성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직인				

(뒤쪽)

결정내용	
항목	금액
보상금 합계	금액 : 원정(W)
[산출명세 또는 각하 이유]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

결정번호 : 제 호

성명 :

주소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된 손실보상금 결정서의 내용과 같이 손실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적힌 방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손실보상금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손실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 1부

나.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용도: 손실보상금 청구 및 수령용) 1부

다. 신청인의 손실보상금 입금계좌통장(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말합니다) 사본 1부

2. 손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손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손실보상금 결정서 정본 1부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직인

※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손실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각하 결정통지서

결정번호 : 제 호

성 명 :

주 소 :

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된 손실보상금 결정서의 내용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손실보상금 결정서 정본 1부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직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사유	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자)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이하 “융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⑥ (생략) <신설>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 자원 개발사업의 모니터링)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모니

<신설>

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모니터링 위탁기관”이라 한다)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 법 제35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은 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농업협력 분야의 전문기관

②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5.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 사업계획서 또
는 국제산림협력 사업계획서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규정
4. 국제농업협력, 국제산림협력
관련 최근 3년간 연구 또는 사
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
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
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5. 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
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
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
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
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알려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
 2. 업무수행능력
 3. 설립목적 또는 활동영역의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
산림협력사업과의 관련 여부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
림청장은 법제31조의2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
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
력사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신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⑦ 법 제31조의2제1항제5호에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란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 설>

1. 국제농업협력사업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간의 연계
2. 국내기업의 농업기술 해외전파 지원
3. 국내기업의 해외 농업·농촌 관련 사업 수주 등 지원

⑧ 법 제3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과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간의 연계
2. 국내기업의 임업기술 해외전파 지원
3. 국내기업의 해외 산림자원 관련 사업 수주 등 지원

제8조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법 제31조의2제5항에

<신 설>

<신 설>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반입명령서 등) ①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반입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9조의2(반입협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입명령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27조제6항에 따라 협의회(이하 “반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반입명령의 필요성
2. 반입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3. 반입대상 물량
4. 반입 가격
5. 반입 시기

<신 설>

② 제1항의 반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손실보상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제33조제4항에 따른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영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에 손실보상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실보상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 ①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